



제 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원센터의 업무 대상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추가 >

■ 하태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5926호)

2024. 5.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하태경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2023. 12. 14.

다. 회 부 일: 2023. 12.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 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 관한 공정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통상 불리한 위치에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규정들을 두고 있음.

그런데 K-POP의 성장과 함께 대중문화예술인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대등하거나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최근에는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 및 이행과정에서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권익보호가 필요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일정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원센터 업무의 대상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포함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을 통한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권익보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설치할 수 있는 지원센터(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의 업무 대상으로 현행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외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지원센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7조(지원센터) ① -----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및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 ② ~ ④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현행법 제17조1)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① 대중문화예술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7조(지원센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실태 및 권익보호를 위한 국내외 제도조사
2. 불공정거래, 폭력 등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3. 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한 긴급전화센터 연계 및 지원

인,²⁾ ②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³⁾ 및 ③ 대중문화예술기획업⁴⁾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조사·상담·법률지원·교육 등의 업무를 하는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이는 대중문화예술산업계에서 기획사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등을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대중문화예술인과 스태프·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임.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위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연간 15억원 수준의 국고를 보조하고 있음. 콘텐츠진흥원은 이를 바탕으로 아래 표와 같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 운영, 대중문화예술인 등 대상 교육 및 상담, 대중문화예술분야 정책연구 및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민원상담창구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음.

-
- 4.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4의2.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 지원
 - 5.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직업능력 개발 및 교육 지원
 - 6. 업무의 홍보 등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목적에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중문화예술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 및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대중문화예술인”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사람을 말한다.
-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란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과 관련된 기획, 촬영, 음향, 미술 등 업무에 기술적 또는 보조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2023년도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 운영사업 개요]

가. 보조사업자: 한국콘텐츠진흥원

나. 사업비: 1,500백만원(국고보조금)

다. 주요 사업 내용

- (등록제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 운영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 발급 지원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법정교육(최초/연간) 운영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상담·교육) 대중문화예술분야 종사자 교육 및 상담 지원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소양교육 운영
 - 연예인·연습생 심리상담 운영
 - 대중문화예술인 성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교육 운영
 - 대중문화예술인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법률자문
- (기반 강화) 정책연구 등의 대중문화예술산업 기반 강화 활동
 - 대중문화예술분야 정책 연구
 -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 민원상담창구 운영
 - 대중문화예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연 개최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개정안은 위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현행의 대중문화예술인과 스태프·종사자 등에 관한 사항 외에도 ‘대중문화예술사업자’⁵⁾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된 이래 대중문화예술인이나 스태프·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가 지속 강화되어 왔으나 최근

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 1회 이상의 도급에 따라 제작되는 경우에는 상위수급인(도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을 포함한다.

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8. “대중문화예술사업자”란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에는 이른바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사건⁶⁾과 같이 오히려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권익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⁷⁾ 및 아래 표와 같이 대중문화예술사업자도 소규모이고 영세한 경우가 많다는 점⁸⁾ 등을 고려할 때,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함께 강화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산업계의 각 당사자 간 권익의 균형을 제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소속 직원 수 규모별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업체 수]

(2022년도 기준, 단위: 개,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대중문화예술제작업		
구 분	업체 수	비율	구 분	업체 수	비율
1인	955	<u>27.8</u>	5인 미만	1,110	<u>59.7</u>
2인~5인 미만	1,421	<u>41.3</u>	5인~10인 미만	350	<u>18.8</u>
5인~10인 미만	648	18.9	10인~30인 미만	243	13.1
10인 이상	414	12.0	30인 이상	155	8.3
합 계	3,758	100.0	합 계	1,859	100.0

※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자료 재구성

6)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의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는데, 그 배후로 해당 걸그룹의 외부 프로듀싱 팀이 지목되며 이른바 멤버 빼가기(탤퍼링, tampering) 등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 이후 민·형사상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7) 쿠키뉴스, “연예인 권리만 보호하지 말고 기획사 권리도 향상해야”, 2023.10.30. 기사 등 참조

8) 소속 직원 수 규모별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업체 수 자료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자가 69.1%를 차지하고,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자가 78.5%를 차지하여 상당수 업체가 소규모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중 매출 상위업체(1,000억원 이상) 자료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경우 상위 8개 업체가 업계 전체 매출액의 50.7%를 차지하고,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의 경우 상위 6개 업체가 업계 전체 매출액의 43.8%를 차지하여 일부 대규모 업체의 매출액 쏠림 현상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중 매출 상위업체(1,000억원 이상)]

(2022년도 기준, 단위: 백만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대중문화예술제작업		
순위	업체명	매출액	순위	업체명	매출액
1	하이브(HYBE)	1,132,846	1	(주)에스비에스	670,117
2	(주)씨제이이엔엠	829,059	2	스튜디오드래곤(주)	619,908
3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	513,779	3	한국방송공사	318,743
4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291,490	4	(주)문화방송	160,884
5	(주)YG엔터테인먼트	281,951	5	스튜디오에스(주)	160,029
6	(주)샌드박스네트워크	146,230	6	(주)아크미디어	100,332
7	(주)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145,655			
8	(주)스타쉽엔터테인먼트	114,797			
합계 (업계 전체 매출액 대비 비중)		3,455,807 (50.7%)	합계 (업계 전체 매출액 대비 비중)		2,030,013 (43.8%)

※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자료 재구성

다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⁹⁾ 본 법률은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전속계약 등 불공정거래 관행이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근로시간 과다 및 학습권 침해 사례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서, 대중문화예술사업자들이 공정한 영업질서를 조성하도록 하고 이들 사업자 등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인 및 스태프·종사자 등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적극 제기됨에 따른 것임.

9)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창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901159호) 검토보고, 2013. 6. 참조

따라서 본 법률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 대상으로 현행의 대중문화 예술인이나 스태프·종사자 외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추가할 것인 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현황, 사업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 및 동 법률규정 도입이 상대적 약자에 대한 보호 강화라는 당초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문 의 처
02)6788-5376